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5회차 연속토론회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 4회차 진행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1차	3월 30일(목) 19:30~21:30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2차	4월 6일(목) 19:30~21:30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3차	4월 11일(화) 19:30~21:30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차	4월 18일(화) 19:30~21:30	4회차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5차	4월 25일(화) 19:30~21:30	5회차 “제도가 만들어지면 뻔?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육주원

Joowon Yu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이슬람혐오

경북대학교의 국제화와 대현동의 무슬림 주민들

경북대학교 무슬림 유학생 수 150여 명으로 추산, 2012년부터 사원 마련을 위한 노력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 사원건축 허가, 12월 공사 착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사태

2021년 2월 일부 주민들의 탄원서를 근거로 북구청의 당일 공사 중지명령

1. 이슬람 사원 신축시 반경 1.5km의 주거밀집지역의 안전보장이 불확실합니다.
주야막론 - 소음, 냄새, 무시음, 집단적 의식행위 등으로 인한 기주민들의 불만요
소에 대한 방비책이 있는지요? 이를 해결할 방법과 확실한 대안책을 내어주십시오.
2.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의 생명보장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거점으로 한 이슬람인들의 횡포가 예상&우려됩니다. 이로 인한
북구 대현동 주민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내어주십시오.
3. 이슬람사원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 슬럼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요구
4. 주민들의 정서불안과 동네의 폐폐화에 대한 책임을 북구청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5. 청와대-탄원서 및 국민청원을 넣겠습니다. 북구청당국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6. 북부주차장도로 맞은편 원대동-외국인 집단거주로 인한 슬럼화는 하나의 사례입
니다. 동일한 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박탈을 재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7. 대현 1동을 외국인(이슬람인들)의 거점지역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
하였습니다. - 이슬람문화권이 조성된 대한민국 여타지역의 문제점을 감안해주
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주민 탄원서

우리구에서 2020. 9. 28. 건축허가하여 공사중인 관내 대현동 252-13번지 외 3필지상 제2
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
통보하오니, 향후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중지 사유: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

나. 공사중지기간: 2021. 2. 16. ~ 주민들과 합의하여 민원 해결 시까지

북구청 공사 중지 통보문

2021년 상반기

- 반대 주민 설득 노력 및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
- 북구청 중재회의 파행
- 주민측 모금법 위반으로 이슬람사원 고발(이후 기각)
- 대학, 북구청 등 기관들 문제해결 책임 촉구
- 대구 시민사회단체 <이슬람 사원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결성 (2021.10 <대구북구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출처: 뉴스1

2021년 하반기

- 북구청 상대 집행정지 소송 돌입
- 대구지법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 혐오현수막, 공사방해, 반대집회, 행정소송에 반대주민 보조참가 신청...
- 국가인권위, 북구청의 인권침해 인정, 혐오게시물 제거 권고
- 대구지법, 공사중지처분 취소 명령(이슬람사원 건축주 승소)
- 주민측, 공사중지처분 취소명령 항소장 제출 (북구청 법무부지휘로 항소포기, 소송참가인 주민측 단독 진행)



출처: 뉴스민

2022년 ~ 현재

- 지속적 공사방해
- 초기 폭력적 상황에도 경찰의 미온적 대응
- 대구고법, 공사중지처분취소 항소에 대해 항소기각 결정 → 주민대책위 대법원에 상고
- 공사를 위한 자재반입 시도에 물리적 방해 및 폭행
- 북구청장 역차별 발언 및 “민민갈등” 조장 행위
- 대법원 기각판결
- 공사시도와 지속적 방해 → 경찰 개입
- 돼지머리 등장, 바비큐 파티, 트로트로 기도 방해, 기름 투척…
- 세입자 퇴거, 일상적 괴롭힘, 공사현장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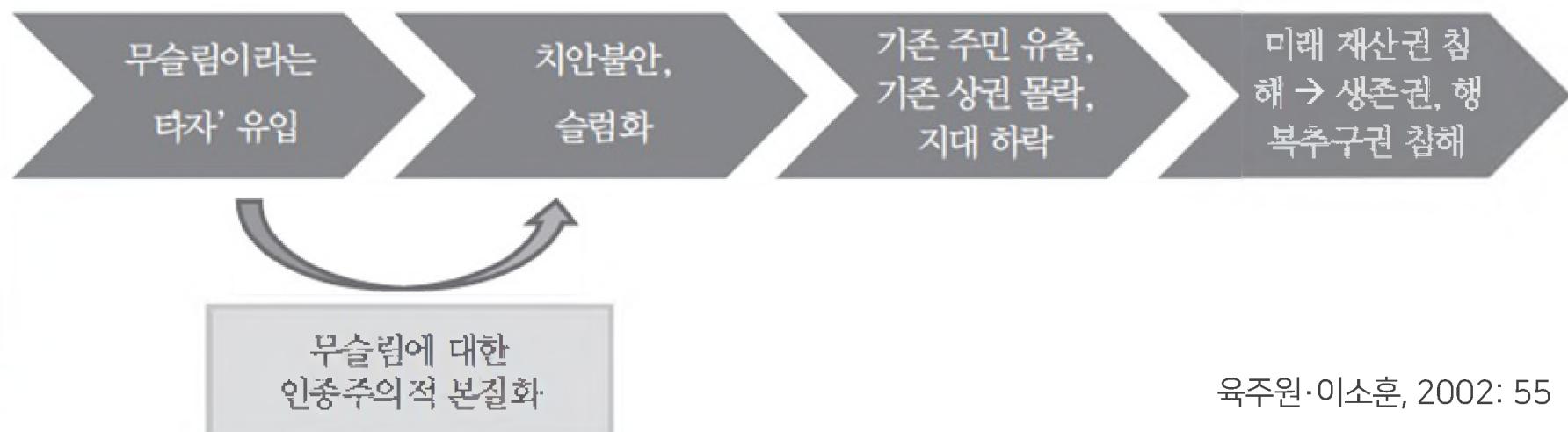


특징과 쟁점

- 한국사회 이슬람혐오의 확산
- 다문화사회 적극적인 차별행위 가해자로서 '선주민' 집단의 등장
- 다문화, 세계화 시대 국가의 국경만들기(bordering)
- 국경의 일상화(everyday bordering)와 시민사회운동의 곤경과 과제

이슬람혐오 Islamophobia

- 21세기 '문명의 충돌', 전세계적 이슬람공포증 확산
- 한국 맥락: "무슬림 없는 이슬라모포비아"(구기연, 2018)
- 한국 사회 내에서 재발명되는 이슬람혐오
- 유럽/서구를 준거로 한 예방적 조치로서의 담론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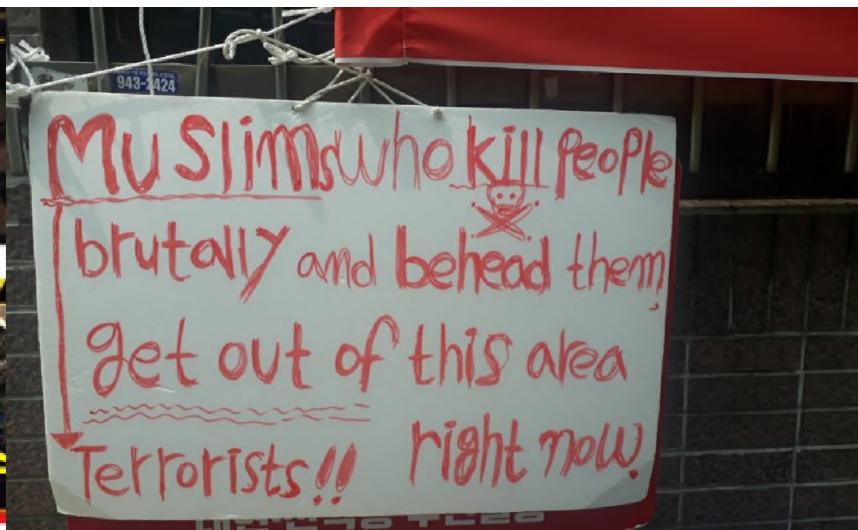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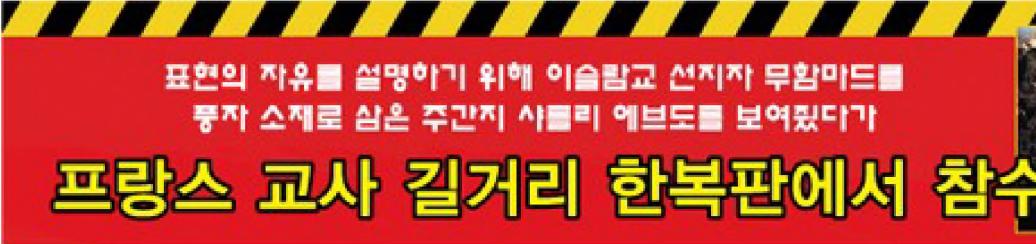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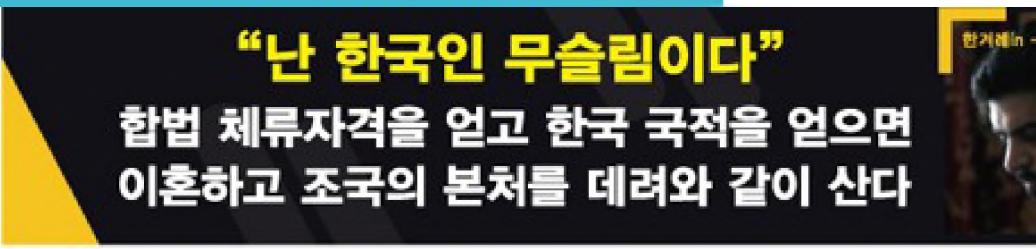
육주원·이소훈, 2002: 55

이슬람혐오 Islamophobia

경제담론 → 치안담론

반다문화 반난민의
인종·젠더 정치

출처: 육주원, 2019



적극적인 차별행위 가해자로서 '선주민' 집단 등장

'약자성'의 경합과 역차별 담론

- ✓ 선주민의 경제권 vs 이주민의 종교·문화적 권리

위계화되고 인종화된 '권리' 개념으로서 '국민' 개념 부상

- ✓ 국민이 먼저다!

주변 개신교 세력 및 전국적 이슬람 반대 세력의 개입과 연대

- ✓ 이슬람혐오 언어와 실천의 구체화



다문화, 세계화 시대 국가와 국경만들기 (BORDERING)

대구/경북

북구청장,

"이슬람사원 논란은 자국민이 역차별 받는 사안"

다문화사회, 인권 vs 선별적 국경관리 강화

- 단속과 추방
- 배제와 차별
- 책임 방기와 차별 조장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문화위원회 집의에 대한 답변
○ 천리고 이슬람사원 건축부지 할 이슬람당으로 표현, 이슬람사원 공사는 데 및 보육을 목적으로 배치머리 두 개가 방치된 상황에 대하여 북구청의 입장은?

- 배치머리 양자는 구청에서 판악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서 : 자원순환과 도시생활환경 조례법 105-2734>

○ 천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구정공은 폐기물 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의 폐기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된 부적절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북구청은 어떠한 행정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폐기물 관리법」 제2조 폐기물의 정의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 등 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 폐지머리 등 살금은 사생전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사용중에 있어 해당 주민에게는 필요한 물품이며, 일정 주기로 새 물품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가 되고 있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 해당되지 아니하며,

- 귀 단체가 제출한 대법원 판례는 계약상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부가한 사례로 이번 건과는 무관하므로 자원순환과에서 해당 물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형성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경의 일상화 Everyday Bordering

국경? 국경만들기/국경화

- 자연적이고 물리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해되는 국경에 대한 이해를 넘어 다양한 공간으로 확산, 시민사회 곳곳에 편재하는 것으로서의 국경에 대한 이해 (e.g. Balibar, 2004)
- 국경관리 주체, 장소와 방법의 다변화
- 각종 이데올로기, 담론, 제도, 사회운동 등을 통해 수행되는 일상에서의 국경의 구축과 해체/재구축
- 소속감의 정치와 국경만들기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국경의 일상화

- 북구청의 공사중지명령
- 반대주민들의 BORDERING에 정당성 부여
- 반대주민들, 북구청과 함께 소송 진행
 - 혐오현수막, 각종 공사방해 행위, 혐오 행위에 대해 대응 X
 - 법과 경찰의 대응 … 갈등 현장에서의 국가의 역할?
- 국경만들기에서 국가-시민/국민 간 상호작용



“폭력적 인종주의자들은 언제나 아주 소수”일 뿐이나 이들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는 국가와 사회가 양산하는 “평범하고 비폭력적인 인종주의”의 정도에 달렸다.

(Hage, 2002: 247)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 중재 및 설득 노력
- 북구청, 대구시, 경북대 등 책임 기관 문제해결 촉구
- 국가인권위, 국제인권기구 등에 제소
- 미디어 대응
- 학생, 시민 교육 활동
- 무슬림 학생/가족들과의 일상적 연대 활동



국가-시민사회, 사회운동

국가: 억압의 주체? → 혐오차별 조장·방조자
형식적 갈등관리와 정치적 부작위

시민사회: 시장에서 패배한 개인들이 불평등, 존재론적 불안, 부정의 등에 대한 제각각의 감정을 표출하며 국가를 향해 SOS

- '탄원의 정치'
-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의 출현 및 발전과 극우 시민사회운동의 성장과 제도화

시민사회운동

-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국가 폭력에 대항하던 과거의 방식으로는 현재의 시민 vs 시민으로 표방되는 갈등 구도에서 취약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의 필요와 의의

누가 주민인가?

다문화사회에서 아주배경 '주민집단'과의 공존과 배타적
국경만들기 해체 가능성

한국 사회 유사 갈등 발생 시 참조점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반이슬람혐오, 반인종차별의 문제의식 확산

국민우선성으로 나타나는 혐오주장에 대한 성찰

감사합니다

joowon.yuk@knu.ac.kr

한국의 인종차별적 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I. 한국의 인종차별

1.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하는가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 하는 사람들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내심 생각할지도 모른다. 한국에 인종차별 할 만큼 외국인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동양인이어서 백인들이 흑인들 차별하는 것처럼 인종차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도 엄연히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식 K-인종주의’는 너무나 공고하고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사람들이 채 눈치채지도 못한다. ‘한번은 불러보았다’의 저자 정회옥은 조선말 일제를 통한 서양문물의 도입과 함께 수입되어 온 ‘인종주의’를 보여주고, 한국식 인종주의의 특징을 짚는다.

그에 따르면, 많은 개화기 엘리트가 서구의 인종주의적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백인의 시각대로 흑인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다. 백인은 긍정적 표현으로, 동양인은 부정적 표현으로 묘사하였다. 조선을 근대화, 서구화, 문명화 시켜야 한다는 개화기 엘리트들의 욕망은 서구의 인종주의까지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이는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아시아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대개 구라파 사람들은 가죽이 희고 털이 명주실같이 곱고 얼굴이 분명하게 생겼으며, 코가
바르고 눈이 크고 확실하게 박혔으며, 동양인은 가죽이 누르고 털이 검고 뻣뻣하며, 눈이 기
울어지게 박혔으며 이가 밖으로 두드러지게 났으며, 흑인들은 가죽이 검으며 털이 양의 털
같이 곱슬곱슬하며, 턱이 튀어나왔으며 코가 넓적한 고로 동양인보다도 미련하고 흰 인종보
다는 매우 천한지라. 미국에 토종은 얼굴빛이 붉으며 생긴 것이 동양인과 비슷하나 더 크고
개화된 것이 동양인만도 못한지라. …… 백인은 오늘날 세계 인종 중에 제일 영민하고 부지
런하고 담대한 고로, 온 천하 각국에 모두 퍼져 차차 하등 인종들을 이기고 토지와 초목을
차지하는 고로, 하등 인종 중에 백인과 섞여 백인의 학문과 풍속을 배워 그 사람들과 같이
문명 진보 못 하는 종자들은 차차 멸종이 되어…….

—《독립신문》, 1897년 6월 24일.

<한번은 불러보았다>, 정회옥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 이후, 미군부대가 남한에 주둔하면서 미군 남성과 한국 여성 간 출생한 이른바 ‘혼혈아’가 다수 등장하였다. 이들에 대한 이승만정부의 대책은 ‘해외 입양’ 이었다. 친부를 찾아 양육의 책임을 묻거나, 한국 여성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오로지 ‘피가 섞인’ 아이들이 한국 땅 밖에서 살도록 내쫓는 것이 K- 인종주의의 한 양상이었다.

2. ‘인종차별’의 정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차별을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으로 정의한다(제1조 제1호 전단). 차별행위 혹은 부작위, 정책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제1조 제1호 후단).

인종차별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헌법 제11조)이며, 국제규범에서 정한 인권침해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전문은 인종차별의 해악에 대해 명확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인간의 차별은 국가 간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장애물이며 국민간의 평화와 안전을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단일 국가 내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 인간들의 조화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종적 장벽의 존재가 어떠한 인류사회의 이상과도 배치됨을 확신하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실증적인 인종 차별의 시현과 또한 인종적 우월성 또는 증오감에 근거를 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인종분리 또는 격리와 같은 정부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즉, 인종차별은 국가 간의 관계를 저해하고, 국민 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조화를 해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지역 내 발생한 무력 충돌과 정세불안,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일본의 관동 대지진 학살과 같은 제노사이드 현상이 촉발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힐은 말할 것도 없다.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17차, 18차, 19차 정부심의 대응보고에 관하여 최종견해를 밝혔다¹⁾.

1) CERD/C/KOR/CO/17-19

6.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 that the State party expedite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law that defines and prohibits direct and indirect racial discrimination on all prohibited grounds, in line with article 1 of the Convention. It also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 (*ibid.*, para. 8) that the State party amend its Criminal Code to consider racist motivations as aggravating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criminal offences, in line with article 4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et up a mechanism to collect statistics on racially motivated crimes, disaggregated by race, colour, ethnicity, national origin, religion, immigration status, gender and other indicators that would identify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에 따라 모든 금지 사유에 대한 직간접적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법률을 조속히 채택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이하 생략)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위 권고 제6항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규정된 대로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간접적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이 없다.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인종차별인지를 식별할 만한 내용이 담긴 법령이 없다.

II. 국가에 의한 인종차별

1.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코로나19 대유행은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보편적인 방역과 그에 대한 전 시민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상 차별은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시민으로서의 이주민을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를 기화로 정부에 내재되어 있던 차별의 가시를 드러내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1) 서울특별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시행하였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판단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별로 거소등록 혹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와 난민 인정자 등은 포함하였다.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2020. 3. 23.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중 경기도민인 자에 대하여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외국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2020. 5. 4.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의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비판

이주민권단체를 비롯하여 난민신청자, 외국국적동포, 혼인이주여성 등은 2020.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조례는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법 제12조)이다. 주민등록법 역시 주민의 개념을‘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만 등록 대상에서 외국인을 예외로 정한 뿐이다. 서울시는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서울시 관내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고,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2조) 고 하여 외국인주민의 시에서의 지위가 한국인 주민과 동등함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진정 제기 당시 외국인 전부를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주민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정책으로 비판 받았다.

이러한 차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상권의 상인에게도 간접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암고 있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취지 중 하나는 경기 부양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인데, 해당 상권에 살고 있는 주민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권 활성화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대하여 차별 시정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일부 수용하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주민을 지급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경기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이주민과 영주권자를 지급대상에 새로이 포함하였다.

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외국인의 경우 혼인이주민과 영주권자까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경기도의 지급대상과 동일하였다.

이에 대하여 혼인이주민과 영주권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킨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며,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민 역시 그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전염병 관리 대책에 협조하고 격리 등 의무이행에 따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비판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잇따랐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시혜적 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사업 시행 주체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하며 진정을 기각하였다.

2. 지역 사회에서 만연해진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

코로나19 대유행은 그간 은폐되어 있던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가시화하였다. 일회성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동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보육료 차별로 인한 돌봄 공백의 문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 배제로 인한 병원 방문 등 어려움의 증가 등 복지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목도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재난지원금 정책’ 이후 고민 없이 일부 외국인주민에 한하여 복지 정책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다. 가령 서울특별시는 서울 거주 임산부에 대하여 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행정임이 지적되자, 국민의 배우자인 혼인이주여성에 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문제를 무마하였다.

혼인이주민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한국인의 혼인 외 자녀를 임신한 외국인 미혼 임산부의 경우, 그 자녀의 친부가 한국 국적의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로서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이 특별히 국가의 모성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헌법 제36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성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 합리성 없는 차별이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정책 범위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법 배제 법안

2023년 3월 22일, 조정훈 의원 등 11인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위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위 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국민인 가사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적용도 배제할 수 있도록

록 하여 외국인인 가사근로자와 국민인 가사근로자를 차별대우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는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헌법 32조 제1항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한다. 외국인 역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다. 해당 법안의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목적을 이주 노동자 착취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은 착취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식민주의적 발상이다.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가정에 가사노동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싸게 고용할 권리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III. 인종차별의 해소 방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다면, 무엇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인종차별의 적극적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차별시정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의 수립의무를 지며, 그 이행결과도 공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 영역에서의 부당한 차별 역시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종교에 의한 차별, 고용상의 차별, 연령상의 차별, 성별에 의한 차별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복합된 소수자성을 띤 사안의 경우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적용 검토를 통해 보다 넓은 시야에서 차별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어떤 것이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한국 사회가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얻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종차별뿐만 아니겠지만, 우리는 적극적 문제제기를 통해 다투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쌓여가는 사례들을 참고함으로써 차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차별의 부당성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는 차별과 혐오 등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차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구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원하기 ❤

정기후원 CMS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재)인권재단사람이 운영하는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재정발전소 회원단체입니다. 다음 양식을 통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지정하여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에 기부하시면 회원님의 CMS 출금계좌와 기부금영수증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며, 기부금은 <재정발전소> 사업을 통해 단체에 배분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지지하고, 제중 운동에 힘을 실어주시고자 한다면 정기후원 CMS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일시후원 : 지정기탁 / 계좌이체

정기후원 CMS 외에도 지정기탁 및 계좌이체를 통해 일시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정기탁 (※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지정하여 일시기부를 원하실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면, 기부금영수증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며 기부금은 <재정발전소> 사업을 통해 단체에 배분됩니다.

지정기탁 방식으로 일시후원 하려는 경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메일로 먼저 문의해주시면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이메일 : equalact2017@gmail.com

2) 계좌이체 (※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시는 경우,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